

굴 산업의 발전방향

장경일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

1. 현 실 태

굴 수하식 어업권은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800건 5,115ha의 면허에 생산예상량 55,700여톤 중 수급량은 43,790톤이다. 일본의 수입규제 여파와 냉동굴 및 통조림등 가공굴 수출둔화로 금년도 적체량이 11,910톤에 달하므로서 어업인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세계 25개국에 수출해 국내 수산물 수출 12억7천만불중 단일품종으로는 최대인 1억2천만불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2년도의 경우 주요 수입국들의 비관세 장벽인 위생관련 검사강화로 대미 냉동굴 및 대일 생식용 생굴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내수시장도 경기침체 및 수출 부진에 따른 물량 적체로 인해 엿가가 크게 하락되어 어업인들의 막대한 소득감소와 양식기반의 위기에 처해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잠재력 있는 내수시장 확대와 일부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이번 내수시판용 생굴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발생과 이에 따른 언론보도 사태가 계속 발생할 경우 굴산업의 존폐가 걸려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위생안전성 확보 문제는 어업인과 관련기관, 수협, 중도매인, 가공업체 모두가 의식전환과 함께 환경 및 시설개선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문제점 및 대응방안

가. 종묘의 안정적 확보와 상품성제고

이러한 굴 산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묘의 안정적 확보와 우량 굴의 생산으로 상품성을 제고해야 한다. 연안환경 악화 및 채묘가능지역이 한정되어 자연채묘가 부진함에 따라 우량 모配偶의 보존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굴종묘의 안정적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인공종묘생산을 통한 선택교배로 상품성이 뛰어난 우량종묘 생산 보급을 위해 굴 종묘배양장 16개소(총사업비 62억원)가 사업 시행중에 있으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먹이생물 공급등 다각도의 지원이 절실하다.

나. 굴 수하식 시설기준의 법제화 추진

현행 법령상 ha당 수하연수, 수하연 길이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지역적 특성, 어장의 수심, 조류 등을 이유로 임의 시설하고 있다. 국내외 소비가 부진할 경우, 뚜렷한 대체 방안이 없는 현 실정에 품질 경쟁력 향상으로 적정 어가 유지를 위해서는 적정 시설을 통한 물량감축이 최우선 과제다.

위와 같이 현재 굴산업은 과잉생산 및 수출부진에 따른 내수시장 홍수출하로 어가가 하락되어 굴 수급 조절에 애로가 많다.

우리 수협은 어업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굴 수하식 시설기준을 제정을 건의하여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입법예고(해양수산부 공고 제 2003-112호)하고 관계부처에 심의중에 있어, 이 규칙이 시행된다면 시설기준 제도화를 통한 물량 수급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고 있다.

또한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육상의 오폐수 대량 유입차단과 만별 어장수용능력 조사를 통한 어장 재배치로 자가 오염을 줄이고 고품질 상품생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 굴 간이 박신장 현대화 사업 추진

위생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굴 간이박신업은 단순가공으로 기본위생 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작업하므로서 위생안전 및 수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20개소씩 총 100개소에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굴 간이 박신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간이박신업계의 위생 안전성에 대한 인식제고 및 위해요소의 신속한 추적을 위해 우리수협에 상장되는 생굴에 대해 생산자 실명제를 실시해 국민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수입국들의 위생검사가 더욱 강화되고 대일수출 생식용 생굴에 대한 PCR 검사가 실시된다. 그러나 국가 검사기관의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수출업무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되어 우리 수협에서는 국민보건위생과 수출용 생굴의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703백만원을 투입해 실험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출용 생굴에 대한 위생안전성 검사강화로 수출 감소가 불가피해 어업인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 어장환경 여건 변화로 비만도 저하에 따른 상품성 저하와 생산비 이하 납품 또는 가공 굴의 어대금 정산 기준이 상실되어 채산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생굴 위생관리 종합대책 마련

생굴 섭취로 인한 식중독 및 각종 위생관련 문제점으로 인하여 환자발생과 언론보도시 국내소비 급감은 물론 수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서 생굴 위생관리에 대한 종

합대책을 마련하여 우리업계의 피해 최소화와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위생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굴 생산해역과 굴가공업체 및 박신장, 굴 어장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주 1회 이상 검사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국내유통 및 가공 단계의 생굴에 대한 모니터링도 꾸준히 실시하여 문제점 발생시 위해요소를 개선하고 출하 및 채취중단조치를 취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마. 불법어업의 철저한 단속

향후 굴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무면허, 초과시설 및 품종변경등 불법어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적정생산을 위해 어업인들이 자체 제정한 지역별 세부시설기준(ha당 수하연수 및 수하연 길이 조절)법제화를 통한 행정지도와 함께 무엇보다 어업인 스스로 굴 수급을 조절하고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어장별 수용력 평가 및 적정 시설량 설정을 통한 효율적인 어장 재배치도 요망된다.

바. 소비시장확대 및 소비전략마련

또한 제품의 위생안전성 확보로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자체 실험실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신제품 개발, 냉동굴 및 통조림 국내시장 발판 마련으로 국내외 소비시장 확대 및 소비전략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사. 수출용 패류생산 해역 추가확대

굴의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굴 박신장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수출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수출용 패류생산 해역의 추가 확대가 절실한 실정이다.